



## 글렌데일 비상사태국에 의한

###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8호

발령일: 2020년 5월 8일

###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조치

###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호의 일시 폐지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지방자치법의 2.84조에 의거하여 글렌데일 시의회는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하는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코로나19)에 대해 늘어나는 우려로 인해 불가피한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결의안 20-28호를 채택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짧은 기간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가 사람 간에 쉽게 퍼진다고 알렸으며 대중은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급하였다. 또한, 2020년 3월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과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노력을 배로 강화하였다. 시정부인 우리가 커뮤니티 확산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2.84조에 의거하여 비상서비스국장의 비상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글렌데일 시 전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근접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특정 시설에 대한 일련의 일시적 규제를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23일, 비상서비스국장은 시가 소유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에서 시의 등산로와 스포츠/운동 경기장, 운동장, 운동시설은 문을 닫는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를 채택하였다.

2020년 3월 24일에 그러한 명령은 시의회가 비준하였다.

이제 따라서, 글렌데일 시법령의 2.84장에 의거한 권한으로, 비상서비스국장은 2020년 5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비상사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령한다.

1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택대피령의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4는 일부 폐지되고, 등산로와 하이킹코스에는 있는 개인은 필수적인 신체적 거리를 두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시정부 결의안 20-41호에 따른 요건),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2항.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반은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항의 규정으로 집행된다.

2020년 5월 8일,

오후 2시 11분

시간: \_\_\_\_\_

서명인: \_\_\_\_\_

*Yasmin K. Beers*

야스민 K. 비어스 (Yasmin K. Beers)

비상사태 서비스 국장

양식 승인:

마이클 J. 가시아(MICHAEL J. GARCIA), 시 검사

서명인: \_\_\_\_\_

*Michael J. Garcia*

직분: \_\_\_\_\_

시 검사

날짜: \_\_\_\_\_

2020년 5월 8일